



IFRS 적용실무 해설

이 자료는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의 각 주제별 담당자들이 해당 이슈별로 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며, 향후 2~3년 간 IFRS 도입시점까지 이슈를 주제별로 소개할 계획이다. <편집자 註>

2007년 3월 15일 국제재무보고기준(이하 “IFRS”)의 전면도입 로드맵 발표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 및 회계 산업에서는 오는 2009년 이후 IFRS 도입 준비가 가장 큰 화두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IFRS 도입 로드맵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 및 준비 상황을 주제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실시한 2008 IFRS Survey 결과에 의하면 “IFRS 기준 및 해석의 어려움”이 IFRS 도입에 따른 주요 장애요인 중 첫번째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는 IFRS는 원칙중심(“Principle based”) 회계기준으로서, 기존의 규정중심(“Rule-based”)과 달리 실질 판단에 따라 원칙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IFRS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적합성을 중시하여 복수의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고 있으며, 원칙에 부합한다면 다수의 실무관행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본고에서는 IFRS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주로 발생하였던 이슈들과 삼일회계법인의 IFRS 자문 업무에서 축적된 경험을 기초로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본고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상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공인회계사”에 동시 기고되어 기업과 감사인, 그리고 시장참여자들의 일관된 해석 및 적용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작성 : 이갑재 상무(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Leader)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연결에서 제외되었던 종속회사의 연결

(주)한국은 2011년 처음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제표를 공시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K-IFRS전환일은 2010년 1월 1일로 간주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개시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작성하려고 한다. (주)한국은 자동차 제조회사로 몇 년전 유럽에 2개의 100%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두 회사에 대하여 지배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법규상의 요구사항으로 연결재무제표에 종속회사로 회계처리되지 않아왔다. K-IFRS 개시재무상태표 작성 시 (주)한국은 이 두 자회사를 연결하여야 하는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는 최초채택기업만이 적용 가능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이라는 기준서가 있다. 이 기준서는 최초채택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시의 부담 경감 및 다른 기준서의 제·개정과의 형평성 등을 위한 선택적 면제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연결에 관한 기준서인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요구사항에 대한 면제규정이 기준서 1101호에는 없으므로, 과거 연결하지 않았던 종속회사라 하더라도 이 연결기준서 1027호에 따라 지배력이 존재하여 연결범위에 포함된다면 반드시 연결해야 한다. 기준서 1027호에 따르면 지배력이 존재하는 경우는 종속회사로 간주하여 연결해야 하고

다른 법률적 요구사항의 영향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K-IFRS 개시재무상태표(현행 기업회계기준상은 대차대조표, IFRS에서는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는 이 두 자회사가 연결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과거에 이 두 회사를 연결한 적이 없으므로, 두 자회사가 (주)한국과 동일한 시기에 최초로 K-IFRS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하였을 시의 자산과 부채의 금액으로 (주)한국의 K-IFRS 개시재무상태표에 포함해야 한다(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B2(10)).

우리나라에서 연결범위는 외감법의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직전 자산총액 7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 청산, 매각이 예정된 종속회사 등은 연결범위에서 제외되어 왔다. 또한, 자산유동화기업과 같은 특수목적기업도 연결범위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았다. K-IFRS에서는 이러한 회사에 대한 예외적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K-IFRS 채택 시 지배력 유무에 따른 연결범위를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며, 연결범위에 포함되게 된다면 위에서 설명된 방식에 따라 K-IFRS 개시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연결재무제표에 종속회사로 포함될 경우 이러한 종속회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 회계정책 일치,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영향 검토, 연결결산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정비 등 단순한 회계 상의 문제를 넘어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기업은 사전에 연결범위에 대한 판단 및 이에 따르는 변화를 치밀히 검토하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수익인식

- 관련 비용의 합리적 추정

A사는 영구운동의 법칙에 근거하여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였다. 동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A사의 기술은 이 분야에 있어 새로운 기술이므로 동 엔진에 대한 과거 검증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첫번째 엔

진의 판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A사는 예상되는 품질보증비(warranty)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나 엔진의 판매를 위하여 1년간의 무상 품질보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에서는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으로 '관련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8호 문단 14(5)). 일반적으로 회사는 신제품의 출시 시 유사한 제품군의 과거 품질보증 데이터 및 동종 업계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관련 원가를 추정한다. 그러나 관련 원가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특히 산업에서 전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제품 출시로 인하여 품질보증비용 등 향후 발생할 관련 원가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략적인 예측을 통하여 해당 부채를 인식하고 관련 수익을 즉시 인식하는 경우가 현행 기업회계기준 하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기 사례에서 A사의 경우, 엔진의 개발은 새로운 기술로서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 자체의 자료에 의해서는 발생할 관련 원가(품질보증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관련 동종업계의 자료가 사용 가능하고 이를 통한 원가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다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만약 새로운 엔진의 개발이 동 업계에서는 전혀 새로운 기술로서 가용한 자료를 통한 관련 원가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운 엔진의 매출인식을 관련 무상 품질보증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지연할 것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수익인식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K-IFRS의 기준서상의 문구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대한 판단에 따라 실무 적용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특히, 위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수익과 관련된 원가의 신뢰성 있는 추정 의 문제는 K-IFRS를 도입하면서 현행 회계관행과도 연



관되어 다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수익인식을 위한 관련 원가의 추정이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작성 : 유승경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1.3 내재파생상품

- 판매계약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전력회사인 B사는 3년간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기의 매월 공급가격은 계약상 명시된 천연가스 공급시장에서의 천연가스 공시가격에 연계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P_t = a \cdot NG_t + b$ (단, a, b는 상수이며, NG_t 는 해당 월의 천연가스의 월 평균가격이고, B사가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에서는 전기공급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전기의 시장가격이 공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 B사는 위와 같은 가격산정방식을 내재파생상품으로 보아 분리 인식하여야 하는가?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이며,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동시킨다. 내재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등의 변수에 따라 변경시킨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문단 10) 회사의 자가 사용목적으로 비금융자산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 및 향후 매입, 매출 또는 사용 목적으로 실물로 인도되는 구입, 판매 약정은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러한 계약이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 기준서에서는 이러한 매출 및 매입계약 등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1)가격산정방식, 2)계약에 포함된 외화요소, 3)물가상승으로 인한 조정요소, 4)가격 및 수량에 대한 캡, 플로

어 등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내재파생상품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한다. (1)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문단 AG30과 AG33 참조). (2)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3)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문단 11) 따라서,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분리인식 해야 하는지는 주계약과의 밀접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이며, (이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문단 AG30과 AG33은 각각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분리하지 않을 것이다.

B사의 경우, 천연가스 가격에 연계된 가격산정방식으로 인해 향후 전기 공급에 의한 현금흐름이 가격산정방식이 없을 경우의 현금흐름 즉, 공급시점의 시장에서의 전기공급가격에 의한 현금흐름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산정방식을 내재파생상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천연가스가 전기생산을 위한 주된 연료이지만, 전기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기초변수들이 천연가스의 원가 및 공정가치 변동 모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밀접한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질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양적인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당 사례에서는 전기공급가격과 천연가스의 가격이 양적인 분석에 따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A사는 가격산정방식에 따른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계약은 향후 36개월 동안 매월 만기가 도래하는 36개의 천연가스선도가격에 의한 전기공급계약이 될 것이며, 내재파생상품은 36개월 동안 매월 만기가 도래하는 36개의 천연가스선도매도계약이 될 것이다.

작성 : 김수완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IFRS Group)